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6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문수・민병덕

박희승 • 박해철 • 박 정

김정호 · 송옥주 · 민형배

서영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,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,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2조 등).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2호 중 "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"을 "지원"으로 한다.

제4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절의2 자산형성지원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2조(자산형성지원사업) ① 정부는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하는 사업(이하 "자산형성지원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다. 다만, 아동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·절차, 지급의 정지 및 환수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8조(자립지원) ① ---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1. · 1의2. (생략)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 -----기원 지원"이라 한다) 3. ~ 5. (생략)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2절의2 자산형성지원 제42조(자산형성지원사업) ① 국 | 제42조(자산형성지원사업) ① 정 부는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・발전 하기 위하여 아동이 18세가 될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 업을 실시할 수 있다. 동의 계좌에 지원하는 사업(이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하 "자산형성지원사업"이라 한 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 다)을 실시할 수 있다. 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 금액은 아동이 18세가 될 령으로 정한다.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다. 다 제43조(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- 1. (생략)
- 2.
 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

   발굴 및 관리
- 3. ~ 5. (생 략)
- ③ (생 략)

 만, 아동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

 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

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•절차, 지급의 정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43조(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(2)	 	 	 	 	 	 	_
	 	 	 	 	 	 - —	_

----.

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